보도일시: 2023. 7. 12.(수) 08:00 이후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2023. 7. 12.

관 계 부 처 합 동

순 서

Ⅰ. 추진배경 ····· 1

※ 제1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주요 추진실적 ····· 2

Ⅱ. 추진방향 ····· 3

Ⅲ. 업종별 빈일자리 해소방안 ····· 4

1. 건설업(해외건설업) ····· 4

2. 해운업 ····· 6

3. 수산업 ····· 8

4. 자원순환업 ····· 10

5. 기존 6개 업종 보완과제 ····· 12

Ⅳ. 빈일자리 해소 인프라 확충 ····· 14

1. 근로조건 개선 ····· 14

2. 매칭지원 강화 ····· 14

3. 외국인력 확충 ····· 15

Ⅴ. 향후 추진계획 ····· 15

Ⅰ. 추진배경

□ 빈일자리 해소를 통한 **고용 모멘텀 유지**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 **「빈일자리 해소방안*」** 발표(3.8., 비상경제장관회의), **세부과제 추진 중**

* **6개 업종별 대응** + **고용서비스** 확충, **외국인력** 신속도입, 중소기업 **근로여건** 개선
↳ 6개 업종: **제조업**(조선·뿌리), **물류·운송**, **보건복지**(노인돌봄), **음식점업**, **농업**, **해외건설**

□ **'23.5월 빈일자리 수**는 **21.4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만명 감소**했으나, **코로나19 이전**('19년 17.8만명) 대비 **높은 수준**

* 빈일자리수/증감(전년동월비, 만명): ('22.10)21.3/2.2 (11)20.4/1.7 (12)21.5/1.8
('23.1)18.4/△2.2 (2)21.5/△0.5 (3)21.3/△0.7 (4)21.6/△0.4 **(5)21.4/△1.1**
↳ 빈일자리: 현재 구인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달 이내 일이 시작될 수 있는 일자리

○ 업종별로는 **제조업, 건설업** 등은 **빈일자리 수**가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구인애로 호소**

* 업종별 증감(전년동월비, 만명): (제조)△**1.2** (건설)△**0.4** (보건복지)**0.2** (운수창고)**0.5** (숙박음식)**0.6**

○ **건설·해운·수산·자원순환업** 등은 **인력부족 해소요구**가 크고, 향후에도 **구인난 심화**가 **예상**되는 **업종**

* **(건설)** 청년층 유입 감소 등으로 현장 인력부족 호소↑
(해운) 신규입직부족, 고령화(60세이상 44%) 등 국적선원수 지난 5년간 약 9%↓
(수산·자원순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력부족 심화

<빈일자리수 및 빈일자리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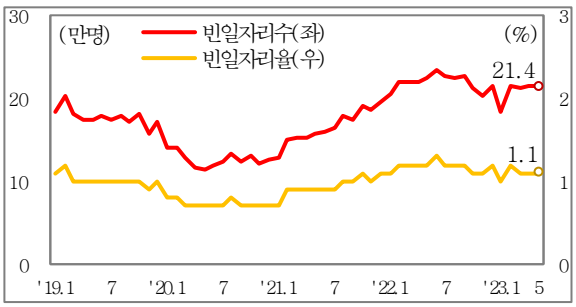

<5월 주요 업종별 빈일자리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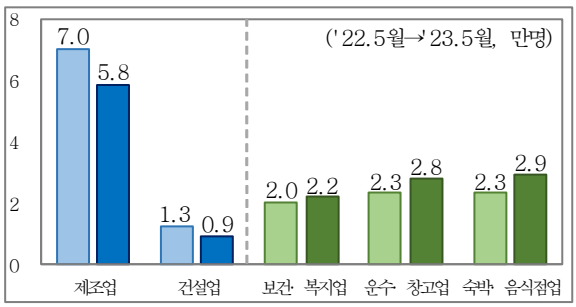

◇ **현장의 요구가 큰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을 추가 업종으로 선정하고, 업종별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

◇ **既 지원방안을 마련한 6개 업종에도 구인난이 지속되고 있는바, 현장 수요에 기반한 체감형 정책과제 발굴·보완 추진**

※ 「제1차 빈일자리 해소방안(3.8일)」 주요 추진실적

□ **[업종별 지원]** 업종별 인력유입·매칭 지원 등 **차질없이 추진 중**

조선업 【산업부】	▸ **조선업 희망공제**(입직자) **지원대상 1,409명 선정**(6.9일 현재) ▸ 외국 인력 **5,033명**(E-7: 3,184명, E-9: 1,849명) 공급(1분기) ▸ **원청 연수원** 활용 협력사 **채용예정자 훈련**(671명 수료)·**채용연계**(509명) ▸ **E-9 '조선업 별도 쿼터' 5천명 신설(4월)**
뿌리산업 【산업부】	▸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평가(6월~, 74개사 지원) ▸ **숙련기능인력 비자(E-9 → E-7-4) 137명 전환** 완료(올해 쿼터 400명)
물류운송업 【국토부】	▸ (**택시**) **대형차 전환**(인가제→신고제) 위한 **시행규칙 개정(4월)** ▸ (**물류**) **자동화 기술개발 모듈개발** 완료 및 시범운영 실시(4월) ▸ (**버스**) **운전자격 취득지원** 정상 추진(6월, 2천여명)
보건복지업 【복지부】	▸ **요양보호사 교육체계 법규 개정, 승급제 시범사업** 추진 중('23.4월~)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인력수급방안**' 마련 중
음식점업 【농식품부】	▸ 외식산업 인력난 해결 분야 **R&D 과제 선정**(3곳, 3월) ▸ **재외동포(F-4) 음식점업 취업허용 위한 고시개정 완료**(5.1.~, 법무부) ▸ **유학생(D-2) 주중 취업시간 연장**(7.3일, 법무부 지침개정)
농업 【농식품부】	▸ **농촌인력중개 연인원 160.2만명 실적**(6월말, 전년동기비 26%↑) ▸ **외국인력 6월말까지 2.4만명 입국**(전년동기비 162%↑) ▸ **숙련기능인력 비자(E-9 → E-7-4) 198명 전환** 완료(6월말 기준) ▸ **계절근로자(E-8) 체류기간 연장**(5→8개월 이내, 6.30~)
해외건설 【국토부】	▸ **마이스터고** 해외연수·해외실습 **계획인원 협의**(3월, 70명) ▸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참여 청년 선정 ('22년 19명→'23년 30명) ▸ **해외 청년인턴 파견 참여 공기업**(7개기관) **MOU 체결**(6.20, 16명 파견)

□ **[빈일자리 해소 인프라 확충]** 고용서비스 확충, 외국인력 공급 확대 등 병행

근로조건	▸ **납품대금연동제** '지원에 관한 사항*'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7.4일) ▸ **대-중소 상생일자리 790명 교육중(6월)** → 500명 채용예정(9월)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선정공고·접수(5~6월) → 선정(9월, 280개사내외)
고용서비스	▸ 「**신속취업지원TF**」로 **1.7만명 채용지원**('22.8~'23.6.14, 전년비 12.9%↑) ▸ '**구직자·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운영센터 조기 확대(4월)
인력양성	▸ **직업계고 경력개발 시범사업** 훈련 실시(3월~, 100여명) ▸ **'미래유망분야 인력양성 사업'** 학과·훈련기관 선정 완료(3월)
외국인력	▸ **'23년 E-9 쿼터 11만명 중 6월말 6.8만명(62%) 고용허가서 발급** 완료 ▸ **'23년 숙련기능인력(E-7-4) 5천명 조기선발** 완료(~7월)

Ⅱ. 추진방향

빈일자리·구인난 해소 → 고용모멘텀 유지
신규
인력부족 심각 '4개업종'별 맞춤형 지원
건설업
▶ 편의시설 설치기준(샤워·탈의 등) 마련, 적용·확산
▶ 건설기능인등급제 기반 교육 확대, 인력매칭 지원
국토부
해운업
▶ 승선기간·유급휴가일 개선, 외항·원양 선원 근로소득 비과세 확대
▶ 우수 외국인 장학생 유치, 외국인력 인권보장 강화
해수부
수산업
▶ '어선원보험' 의무화, 노후 위판장 현대화 지원
▶ 외국인력 쿼터 확대 검토, 복지회관 조성
해수부
자원순환업
▶ 폐기물 공공선별장 현대화·자동화 지원
▶ 산업계 수요 맞춤형 재직자 교육 강화, 고급인력 양성
환경부
보완
현장요구 기반 '기존 6개업종' 추가 과제
조선업
산업부
▶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구체화 등 격차해소 지원
▶ 외국인력 신속도입 지원
뿌리산업
산업부
▶ 여성친화형 근로시간 유연화 지원
▶ '뿌리명장센터' 운영, '도약센터' 신설
물류·운송업
국토부
▶ '특별고용업종' 지정기간 연장·지원
▶ '버스·터미널 지속가능 기반조성 방안' 마련
보건·복지업
복지부
▶ '요양보호사 승급제' 확대 추진
▶ '처우개선 및 인력수급 방안' 마련
음식점업
농식품부
▶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연계 매칭 지원
▶ '푸드테크 산업 육성법' 제정 추진
농업
농식품부
▶ 체류형 영농작업반 확대
▶ '농어업 고용인력 지원특별법' 시행
중소기업 근로여건 개선
+
수요자 관점 일자리 매칭 강화
+
외국인력 도입확대 및 관리시스템 확충

Ⅲ. 업종별 빈일자리 해소방안

1. 건설업

※ '국내 건설업'(신규)과 '해외 건설업'(「1차 대책」) 통합

❖ **국내 건설현장은 고되고 위험한 근로환경 등에 따라 청년층 중심으로 취업기피 현상 발생 → 인력 부족* 및 고령화** 지속**

* 건설업종사자 1,471.0천명, 빈일자리 9.4천명, 빈일자리율 0.6%('23.5)
** 건설업 평균연령 51.4세, 40대 이상 83.9%(전산업 평균 66.5%)('23.5)

○ **해외건설은 청년특화 OJT*, 특별공급 지원**〈「1차 대책」 과제〉 등 차질없이 추진중이나, 일자리 정보제공 시스템 미흡 등 현장애로 호소**

* 청년 인력양성을 위해 청년층 우선으로 현장훈련(OJT) 지원기업 선정·지원('23.6~)
** 국외근로자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확대(해외파견 근로자 포함)로 인력유입 유도

1 근로조건 개선 — 건설현장 편의시설 설치기준 확산, 안전관리 시스템 확충

○ 건설현장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마련('23.下)하여 **관련 공공기관 우선 적용**, 민간 확산** 추진

* 고층아파트 등 건설공사시 간이화장실 설치방안 검토, 근로자 복지시설 개선방안 등
** 유사기준 LH 발주 현장에서 시행 중 →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우선 적용 추진

○ **스마트 기술·장비 활용***한 건설현장 근로조건 개선** 지원** 강화

* 건설현장에 적합한 스마트 안전장비 표준모델 구축 및 평가 기준 개발(~'23.11)
** 지능형 CCTV 등 스마트 장비 보급 확대('22년 25→'23년 50개소) 등 추진

○ 자율적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건설안전 로드맵」** 마련·발표('23.10월)

건설안전 로드맵 주요내용

예 방	▸ 각 건설주체 참여를 통해 현장수용성 있는 예방체계 구축
대 비	▸ 건설안전활동 디지털화 등 스마트한 건설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대 응	▸ 골든타임내 대응 위해 선조치 후보고 체계 마련, 역량강화 등 추진
복 구	▸ 책임소재 명확화, 재발방지 노력 강화 등

2 매칭지원 강화 — 건설기능인 등급 맞춤형 서비스, 해외건설 일자리 서비스 운영

○ **건설기능인 등급***에 기반하여 **교육이력 관리, 인력매칭**** 등이 **개인맞춤형**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련 시스템 개선 추진('24)

* 현장경력, 자격, 포상이력 등을 종합하여 초·중·고·특급의 4단계 등급 부여
** 건설일드림넷 구인·구직 시 직종별 기능인등급 표기 → 구인·구직자 상호 연결

○ 해외건설 분야 **매칭지원**을 위해 **취업사이트**(건설워커) **연계·활용, 채용·인재정보, 취업뉴스** 등 **다양한 취업서비스 제공***('23.下)

* '23.7월 중 정식 운영하는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OCIS, https://ocis.go.kr) 활용

3 인력양성 등 — 청년 건설인력 양성, 기능인등급제 연계 교육

○ **특성화고 학생**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후 기업에서 **3개월간 OJT** 및 **채용**하는 **'건설 뉴 마이스터 훈련사업'** 실시

* 현장과 유사한 실습장에서 기초·실습·응용·안전교육 등 실시(420~480시간)

- **군장병 전역예정자** 중 **건설업 경력·희망자** 등 대상 **훈련** 제공

○ 숙련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건설기능인등급제 연계 교육*** **확대** ('22년 6→'23년 12개 직종) 및 **'숙련기능인력 배치 시범사업' 확대****

* 기능공 육성을 위해 직종별·수준별 맞춤형 교과과정 운영
** 경기도 10개 현장('21년~), 서울시 50개 현장('23년~) 대상 실시

4 외국인력 공급 — 고용제한 처분 기준 개편 등 외국인력 공급 확대 추진

○ **건설업 특성** 반영, 단순외국인력(E-9) **고용제한 사유**(예시: 임금체불) 발생시 **고용제한 처분단위**를 **「사업주→당해 사업장」**으로 **변경**하고,

* 고용제한을 현장단위가 아닌 사업주 단위로 처분하여 사업주의 다른 현장까지도 외국인을 고용하지 못하는 문제 해소

- **고용제한 처분기간**도 **합리적**으로 **조정***('23.7~)

*「외국인고용법」 제20조제1항제1호 최초 적발 시 고용제한 2년 → 1년으로 조정

☞ **규제 개선**을 통해 **합법적** 외국인력 고용여건 조성 → **쿼터 활용(탄력배정분)** 등을 통한 건설현장 **인력수급 원활화 지원 지속**

2. 해운업

❖ **최근 국적선원 인력은 全세계적 해기사 수요 급증, 장기간 승선 및 장시간 근로 등으로 인해 '00년 이후 지속 감소 중**

* 국적선원수(만명) : ('00년) 5.9 → ('10년) 3.9 → ('22년) 3.2

- **특히 과거 고소득·전문직으로서의 위상이 저하됨에 따라, 이직률이 높아(5년내 이직률 78%) 중급자 이하 선원 부족현상 심화**

- **現 선원충원 부족현상 지속시, 10년 뒤 외항상선 절반 이상* 운항 차질 우려, 내항상선 선원 고령화는 외항상선보다 심각****

* '32년에는 외항상선 1,541척(예상) 중 643척만 원활 운항 가능(해기사협회, '22년)

** 전체 선원 고령화율(60세 이상 비중) 약 44%, 내항상선은 약 60% 수준

1 근로조건 개선 — 근로환경 개선 위한 제도 개선, 복지 지원 강화 등

○ **외항상선 승선기간·유급휴가일 개선**(단체협약 사항) 위한 **노사정 협의** 추진('23.下~)

* (유럽) 3개월 승선(최대 4개월)·3개월 휴가 / (韓) 6개월 승선(최대 1년)·2개월 휴가

○ **일반근로자**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선원법」**에 규정

구 분	현 재		개 선(안)
직장내 괴롭힘	‣ 범죄행위외 직장내 괴롭힘 발생시 법적 조치 불가 ‣ 신고 및 고충 상담 채널 부재		‣ **선사 조치의무 발생** 및 위반시 **벌칙 부과** ‣ 전용 모바일 **상담창구 신설**
체불 임금	‣ 수급권 양도·압류·담보제공 가능 ‣ 대상에 출산휴가 급여 제외	→	‣ 양도·압류·담보제공 금지 등 ‣ 출산휴가 급여 포함
구제 명령	‣ 선원노동위원회 구제명령 이행강제 수단 부재 → 분쟁 장기화		‣ 3천만원 이하 **이행강제금 신설**

○ **외항상선·원양어선** 선원의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현 월 300만원)을 확대하여 선원의 **실질소득 증대**에 기여

○ **해기면허 보유자** 등 **전문직군**에 대해 **선사 자체재원** 등을 활용한 **공제제도* 신설** 추진

* 퇴직연금, 적립형 공제 등 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영, 일상 복지 프로그램 운영 등

○ **초급·청년 내항선원** 대상 **적립형 공제 도입안**을 **연구**(~'11월)하고, 업계(한국해운조합), 관계부처·지자체 등과 함께 시행 방안 논의

○ **톤세제 절감액**을 **활용***, 국적선원 고용장려 및 복지 확대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한 **'(가칭)선원발전기금' 조성** 추진

* 톤세제 적용을 통한 법인세 절감액 : 최근 5년('17~'21) 기준 연평균 약 3,700억원

○ **외항상선 인터넷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해상 원격의료**를 위한 **장비설치 지원 확대**('23년 140척) 추진

* 해외 주요 선사는 선원유치 일환으로 초고속 해상 통신망(Starlink) 등 도입

○ **내국인 고용**을 유도하는 **국가필수선박* 지원확대** 검토

*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시 외국인 선원 고용이 6명으로 제한(이외는 8명)되며. 정부는 이로 인한 추가 임금부담(2명)을 선사에 보상

2 인력양성 등 — 해기인력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실습선 신규 건조 등

○ **해상-육상** 근무를 **유연하게 전환**하며 승선경력 유지, 경력단절 선원의 승선복귀 지원 등을 통해 **해기인력 통합관리*** 추진

* (현재) 해기면허 소지자가 일정기간 승선하지 않을 경우 해기면허 정지
(개선) 장기 육상근무시에도 해기면허 유지 → 선원 인력보충 원활화

○ 산업계 수요 맞춤형 **교육기관**(해사高·오션폴리텍) **운항 실습*** **확대**, 선박교육을 위한 **상선 실습선** 및 **어선 실습선** 신규 건조

* (해사高) 국내항 운항 → 원양항해(중국·일본·대만 등) 시행('23~)
(오션폴리텍) 3개월 → 5개월(상선 3급과정), 1개월 → 3.5개월(상선 5급과정)

○ **해양대** 등을 **졸업**한 **항해사**(고급인력)에 대해 **생애주기별 경력경로 개선***을 통해 **장기근속 유도 지원**

* 선·기관장 승진연수 단축 및 이후 승선근무 - 육상직 수시 전환 허용 등

3 외국인력 공급 — 교육 지원, 인권보장 강화 등 통해 외국인 선원 확보

○ **해외 양성기관 - 국내 교육기관 연계*** 등을 통한 **우수 외국인 장학생 유치** 등 세계적 해기사 부족현상 적극 대응

* 주요 선원 공급국 교육기관(필리핀·미얀마 등) – 한국해양대·목포해양대 등

○ E-10 **외국인력 인권보장**을 위해 **송입업체 불법행위**(인권침해 등) **적발시 등록 제외**, 노사정 및 인권단체 **합동점검** 등 추진

3. 수산업

❖ **높은 노동강도, 위험한 업무 등 열악한 작업환경과 청년층 등의 어촌거주 기피현상 등에 따라 인력난 심화**

* 어업분야 취업자수(만명, 하반기 기준) : ('18)7.2 ('19)7.1 ('20)7.6 ('21)8.0 ('22)7.3

ㅇ **특히, 영세업체 중심의 유통·가공업은 열악한 근로조건**

* 중소업체 평균 10.5명이 근무, 수산물 손질·분류 등 고강도 작업 수행

1 근로조건 개선 | 어선원보험 의무화, 어선·작업장 현대화

ㅇ **어선원 안전·복지 개선**을 위해 **모든 어선***의 **어선원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24,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

* ('23) 3톤 이상 어선 → ('25) 全 어선

ㅇ **어선원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어선안전조업법」 개정 추진('23)

<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 주요내용 >

▸ **어선작업 및 위생기준** 등 어선원 **안전·보건 고시 근거** 마련
▸ **선내 안전·보건 유해 요인 파악**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 **어선원**의 **안전·보건**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어선안전감독관 도입 등**

ㅇ 수산 유통·도매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 위해 **노후한 위판장**(경매·유통·보관 등 시행) **현대화*** **지원 강화**('23년 6개소)

* 예시: (하역·운반작업) 손수레 → 지게차, (위판품목 선별) 手작업 → 자동선별기

ㅇ **안전복지형 어선 건조** 시 **선내 복지공간 개선·확충**을 위해 **복원성·화재** 등 **안전기준** 강화

* 조리실, 휴게실, 욕실, 안전조업 준비에 필요한 장소를 선박의 하부가 아닌 최상층의 갑판부에 설치토록 하고, 총톤수(제한) 산정에서 제외 등

ㅇ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27, 6개소) 등 통해 AI·빅데이터 기반의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고, **근로자 직무전환*** 등 지원

* 재직자 대상 신기술·장비 운영기술 교육지원, 수산계高 현장실습·취업 연계 등

2 매칭지원 강화 — 도시-어촌간 매칭 강화 및 지역내 채용 지원

○ 수산물 단순가공 등 **어촌 현장 구인수요 파악, 관계기관 협업체계 구축** 등을 통해 **도시-어촌 간 인력연계*** **추진**('24.~)

* '어업인일자리지원센터'(어촌, 9개)와 '일자리지원센터'(도시, 102개) 간 협력 강화

○ **「2023 부산국제수산엑스포」**('23.11) 등 **박람회·지역축제** 등에 **일자리 부스**를 설치하여, **지역내 구인·구직 활동** 지원 강화

3 인력양성 등 — 후계·청년어업인 육성, 수산기술 인재양성 지원 강화

○ **청년어업인 육성 목표달성** 위해(~'27년 4천명) **수산계高 승선실습 개선***, **블루푸드테크 산·학 연계과정 신설**** 등 검토

* 수산계고교 승선학과(7개교) 승선실습을 '해양수산연수원'으로 일원화('26~)

** 수산계대학 대상 블루푸드테크 전문교육기관 지정 검토

○ 후계·청년어업인을 대상으로 **'기반 마련 - 창업 - 정착단계'**에 이르는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운영**

* (기반마련) 어선청년임대, (경영지원)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 (어촌정착)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귀어자금·청년어촌정착지원 등

4 외국인력 공급 — 외국인 쿼터 지속 확대 및 어촌 적응 지원 강화

○ **어업인 단순외국인력**(E-9), **계절근로자**(E-8) **'24년 쿼터 확대** 검토

* '23년 어업 외국인력 쿼터(명): (E-9) 7,000 (E-8) 5,043

○ 어업분야 외국인력의 원활한 적응을 위한 **외국인 어업근로자 복지회관**(7개소 旣운영, 2개소 건립 중) 조성

* 현재('10년~) : 강원 6, 경북 1 / 신설 예정(~'23년) : 강원 1, 경북 1

4. 자원순환업

❖ **자원순환분야 급성장*으로 필요인력 수요는 증가하나, 기술개발 등 전문인력 부족**, 수거·선별·재활용 분야 등 단순인력은 기피현상 심화**

* 국내 폐기물 처리업 시장규모(조원): ('15) 13.5 ('19) 17.4 ('25 전망) 23.7

** '21년 구직인원 1.9만명 중 채용인원은 1.6만명(미채용률 15.4%)

○ **특히, 50세 이상 근로자 비중이 높아 향후 인력부족 심화 예상**

* (30대 이하) 20.3%, (40대) 34.6%, (**50대) 28.3%, (60대 이상) 16.8%**

1 근로조건 개선 — 미래형 산업단지 조성, 영세업체 근로환경 개선

○ **기술개발, 실증·생산·판로** 등을 **종합 지원**하는 **'지역별 거점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全주기 지원 → **지역 일자리**와 연계

- 지역청년 등 인재유입 유도를 위해 **지역별 유망분야**에 대해 **자동화·집적화**된 **미래형 산업단지 구축** 지속 추진

< '지역별 거점 클러스터' 조성사업 현황 >

구분	전기차 폐배터리(포항)	Post 플라스틱(부산)	자원순환(제주)
기간	'21~'25년	'21~'26년	'22~'28년
목적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고도화	폐플라스틱 고부가가치 재활용	폐플라스틱·폐배터리 등 고부가가치 재활용

○ **폐기물 공공선별장**에 대해 **신규시설**로 **교체, 현대화·자동화** (手작업 → AI·광학 선별) 등 작업환경 개선 추진

* 공공선별장(184개) 현대화(手 선별 → AI 및 광학선별) : '23년 31% → '26년 63%

○ 영세 환경업체 대상으로 **노후시설 현대화**를 지원하는 **'근로환경개선금' 지원범위 확대*** 추진

* (현재) 편의시설 설치, 노후시설 현대화 → (개선) 안전시설 확충까지 지원

○ 의료폐기물 관련 **현장근로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자율주행 **로봇**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및 **현장적용** 추진(~'24년)

* 「감염우려 의료폐기물 처리 기술개발사업(R&D)」 추진 중

2 매칭지원 강화 — 온라인 서비스 제공 및 대학연계, 인력수급 관리

○ **온라인 구인구직 게시판*** **연중 상시운영**을 통해 자원순환분야 취업정보 및 온라인 매칭서비스 제공(화상면접 상시 지원)

* 환경일자리 박람회 공식 누리집(http://ecojobfair.com) 활용, 92개사 참여

○ **창업 · 벤처녹색융합클러스터**(인천 소재) **입주기업***과 **협약대학 연계**를 통해 청년 취업 기회 확대

* 연 매출 1억원 이상, 5인 이상 고용 녹색산업체(33개사)

○ 자원순환분야 인력 현황 정기조사 및 통계기반 구축 등을 통해 **'자원순환 업종별 인력수급 관리'** 추진

3 인력양성 등 — 전문인력 양성과정 확충, 재직자 교육 강화

○ **재직자** 대상 **산업계 수요맞춤형 역량교육** 실시('23, 180명) 및 **디지털 교육 강화***, **교과개방 확대**** 등 지속 추진

* 자원순환분야 인력 양성과정에 디지털 기술 이해 및 활용 교육과정 확대

** 폐자원·환경에너지, 탈플라스틱 등 필요교과 세미나·특강 등('24년~)

○ 산업계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여 **재직자 교육과정 다변화*** 및 **단계별 교육**** **실시**('23)

* 선별시설 자동화 운영, 고부가가치 재활용 전환,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등

** (개선) 일반/전문 단계별 교육 실시로 교육생 접근성 및 교육효과 제고

○ **석박사급 고급인력양성**을 위해 **특성화대학원*** 운영('23, 160명)

* 폐자원·환경에너지, 탈플라스틱 등('24년 폐배터리 재활용 분야 확대 추진)

4 외국인력 공급 — 폐기물 분류 업무 등에 외국인력 활용 확대

○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상·하차 직종** 및 **폐기물 분류** 업무에 **단순외국인력**(E-9) **활용*** **확산** 지원

* '22.12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 통해 E-9 고용허용 신규 결정

⇒ 지자체 등 중심으로 사업장 대상 **안내·홍보** 등을 통해 현장에서의 **외국인력 인력수급 원활화** 지원

5. 기존 6개 업종 보완과제

❖ **업종별 부처 책임관 중심으로 「제1차 빈일자리 해소방안(3.8)」의 현장 이행상황 점검 · 애로사항 파악 → 추가 보완과제 발굴**

제조업 〔조선업 · 뿌리산업〕

○ **〔조선업〕 원하청 실태조사*·격차해소 지원, 기성금 개선** 등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약(2.27)」 후속조치** 차질없이 추진

* 원청 5사 · 사내협력사 500여개 대상 임금·복지수준, 물량팀·외국인력 현황 등(7월~)

- **외국인력**(E-7, E-9 등) **확충 지원** 및 원청·자치단체 협의를 통해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대상·규모, 운영방식** 구체화('24년 신설)

현장의 목소리 ▪ 조선업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입직자에 대한 지원 뿐 아니라 재직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조선업 고용활성화 워크샵, '23.4월)

○ **〔뿌리산업〕 뿌리산업 특화 일자리 매칭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자체**를 **중심**으로 **「뿌리산업 도약센터」 신설·운영 추진**('24~)

- **경력단절 여성** 등 유휴인력 활용 확산을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 지원('24~)

* 지자체 협업·지원, 간접노무비(월60만원×6개월), 교통비(월10만원×6개월) 등

- **디지털 뿌리명장 센터** 운영을 통한 숙련인력의 양성·공급 강화

현장의 목소리 ▪ 열악한 근로환경 때문에 청년들은 지원조차 하지 않고요, 입사하더라도 하루이틀만에 퇴사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금형업계 간담회, '23.5월)

물류 · 운송

○ 시외버스·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23.7~12)에 따른 사업주·근로자 **지원 확대**

* 지원내용: 사업주 훈련 지원한도 확대, 국민내일배움카드 자부담률 인하 등

○ **버스 · 터미널 지속가능기반 조성방안** 논의 · 마련('23.下)

현장의 목소리 ▪ 업계사정이 점차 나아지고는 있지만, 코로나19 이전 대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는 등 운송업계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운송사업연합회, '23.5월)

보건 · 복지

○ **요양보호사 승급제 확대**를 위해 既 시행 **시범사업***('23.4~)의 **효과성 분석**('23.10~) 및 **보수교육 의무화 안착** 추진(시범사업, '23.8~)

* 시설규모에 따라 최대 8인 배치, 요양보호사(실습생) 교육지도, 고충 상담 등 업무 부여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인력수급방안*** 마련('23.10)

* (예시) 직무분석을 통한 업무강도 및 인력수급 취약지 배려, 대체인력 지원 등

현장의 목소리

▪ 업무강도는 높은데 근속년수에 상관없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에 경력도 인정되지 않아 장기근속 할 이유가 없어요.(장기요양기관 방문, '23.4월)

음식점업

○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연계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 신설('23.10)

*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서울, 10.5~7 등) 연계 채용상담회 신설 추진 중

○ 로봇 도입·활용 지원 등 **「푸드테크 산업 육성법」** 제정* 추진('23.下)

* 로봇 도입을 통한 인력부족문제 해소, 외식 경쟁력 강화 지원근거 마련 등

현장의 목소리

▪ 외식산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다각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프랜차이즈협회 간담회, '23.4월)

농업

○ **체류형 영농작업반**을 **지속 확대**하여 **농번기 인력부족 대응** 강화

* (22년) 20개반, 연인원 2만명 수준 → ('23년) 30개반, 연인원 3만명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24.2) 등 **근로환경** 지원 강화

* 주요 내용 : 인력지원센터 설치, 실태조사, 중장기 인력 지원계획 수립 등

현장의 목소리

▪ 농번기에 집중적으로 인력공급이 가능한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이 효과적인데, 체류기간이 짧아 다시 구인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어요.(전북, '23.5월)

Ⅳ. 빈일자리 해소 인프라 확충

1 근로조건 개선 — 중소기업 조직문화 지원사업 강화, 제도 개선

○ **중소기업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제도**를 **법제화***하고, 유연근무 등 **자녀양육제도 활용기업** 우대지원** 추진

* 중소기업인력법에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관련 조항 신설 및 관련 규정 개정

** (현행)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정시 '고용창출' 여부를 중심으로 가점
→ (개선) 자녀양육제도 관련 지표(유연근무, 출산휴가·육아휴직 등)에 가점 항목 신설

○ **청년채용 중소기업** 등 **대상**으로 CEO 교육 등 **청년친화적 조직문화 개선** 및 **취업 청년의 초기 직장적응** 지원사업 신설('24년)

○ **조직문화 컨설팅 지원 강화** 등 중소기업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 효율화** 추진('24년)

* 일터혁신 지원('23년 280억원) : 임금체계·장시간 근로·작업환경 개선 등 컨설팅 수행
근로조건자율개선 지원('23년 20억원) : 20인 미만 사업장의 법준수 점검·자율개선 지원

2 매칭지원 강화 — 수요자 관점 서비스 연계·통합, 기업 상담 지원 확충 등

○ 언제 어디서나 **각종 취업지원 서비스, 직업훈련, 지원금**을 **한곳**에서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고용센터 「(가칭)고용24*」 시범오픈**('23.11)

* 맞춤형 서비스 추천, 지원금 조회·신청 등 원스톱서비스 제공, 민원인 자료제출 간소화 등

○ 기업특성에 기반하여 **「인력수급 진단-컨설팅-맞춤형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지원·확대**('23.下)

* (현재) 35개센터 시범 운영 중→ ('23.下) 48개센터 전국 시행

○ **구인난 해소 지원**을 위해 **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중앙정부 일자리사업에 추가(PLUS) 지원할 수 있는 맞춤형 사업 확대**

조선업	대형 조선사 기술연수원 **훈련생 훈련수당 우대지원**(월20 →100만원)
뿌리산업	여성 인력 활용을 위한 **근로시간 유연화** 지원(기업 간접노무비 월60만원 및 **근태관리시스템, 근로자 교통비** 월 10만원 및 적응교육 지원 등), 최저임금 120%이상 지급 근로자 채용기업 **일도약장려금 우대**(월 60만원 →100만원)
농업	도시(관외)근로자 농가일자리 연계(영농작업 반장수당, 숙박비, 교통비 지원), 농공단지 등에 **상용직 취업 알선**

3 외국인력 확충 | 공급 확대, 관리시스템 확충 등 국내 노동시장과 조화 추진

○ 충분한 숙련인력 공급을 위해 하반기중 금년도 **숙련기능인력**(E-7-4) **쿼터 3만명 추가확대**(0.5→3.5만명)하고, **비자 취득요건 완화*** **추진**

* 소득요건 하향(현재 年 2,600만원) 등

- '24년 단순외국인력(E-9) **쿼터 연내 조기결정, 쿼터 확대 검토**

- 인력부족 업·직종에 대한 현장수요, 인력수급 분석 등을 통해 **단순외국인력**(E-9) **신규 허용업종 검토** 추진

○ **사업장 변경, 숙식비 관련 제도개선** 등 **외국인력 관리 효율화**

- **일정한 권역**과 **업종 내**에서만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공공기숙사 도입**에 적극적인 **지자체**에 고용허가시 우대* 추진

* 예시: 고용한도 상향 검토, 선발 가점 부여 등

○ **외국인 유학생 활용**을 위해 유학 과정 이수 후 **국내 취업 활성화 방안*** 수립 추진('23.下)

* 現) 졸업생 취업 범위 전문직군 한정 → 改) 체류자격 신설 등을 통한 취업범위 확대

- 방학 기간 중 **유학생 전문분야**에서 **인턴 활동** 허용*('23.7)

* 기존) 유학생의 경우 아르바이트 수준의 단순노무분야 시간제취업만 허용

Ⅴ. 향후 추진계획

□ **일자리 TF, 현장점검반** 등 통해 정기적으로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필요시 보완과제 마련 등 **후속조치** 적극 추진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인력수급 방안**(10월), **외국인 유학생 취업활성화 방안**('23.下)등 후속 정책 차질없이 마련·추진